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기 획 예 산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3
----------	-----

제출연월 : 2021.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 관련 주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의 의견제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절차법」을 반영한 입법예고 대상 조문 정비(안 제4조)
- 나. 주민의 규칙·제정 및 폐지 의견제출 규정 신설(안 제19조~안 제23조)
- 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1]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2]

4) 영향평가 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

- 아동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 인권영향평가 :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기타의견 미반영)

구 분	기타의견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인권 영향 평가	개정안 제7조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부분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미반영	- 현재 제4조 입법예고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으며, 긴급하게 입법을 요하는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움이 있음. -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상위법령,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 조례 개정사항 등을 파악하여 검토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와 제66조의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와”를 “제20조, 제32조, 제7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성북구민(이하 “구민”)”을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으로, “구민의”를 “주민의”로, “구민에게”를 “주민에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법규의”를 “자치법규를”로, “운영에 있어서”를 “운영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민,”을 “주민,”으로, “구민의”를 “주민의”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법령”을 “법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법규명”을 “자치법규 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견제출”을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보 및 인터넷”을 “성북구보 및 구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를 “입법 내용과”로, “대하여 직권”을 “직권”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를 “검토하고 입법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필요한”을 “공청회에 개최에 필요한”으로 한다.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제10조 중 “등을”을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치를 수반하는”을 “조치가 필요한”으로, “구 의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1조제1항”으로, “구 의회”를 “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뜻”을 “사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 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날로”를 “날”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자치법규의 정비”를 “자치법규의 정비 및 주민의 의견제출 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구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등)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1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의견제출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한다.

제23조(의견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6조와 제66조의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0조, 제32조, 제7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과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 6. (생략)	제2조(정의) ----- ----- -. 1. 2. (현행과 같음) 3. -----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 ----- 주민의 ----- ----- ----- - 주민에게 ----- -----.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를 ----- 운영할 때에-----

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
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는 일반 구민, 이해
관계에 있는 개인·법인·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
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
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② ----- 주민, -----

----- 주민의 ---

-----.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

-----.

-----.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
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
하는 경우

2. --- 법령 등-----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
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
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3. (생 략)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
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
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
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
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 -----

-----.
1. ----- 자치법규 명
2. 3. (현행과 같음)

4. <u>의견제출에 관한 사항</u>	4. <u>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u>국민이</u>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 ----- <u>주민</u> ----- -----.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u>구보 및 인터넷</u> 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 ----- <u>성북구보 및 구 홈페이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u>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u>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u>대하여 직권</u>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 <u>입법 내용과</u> ----- ----- ----- <u>직권</u> ----- -----.
제7조(예고기간) <u>입법예고 기간</u> 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예고기간) <u>입법예고 기간</u> 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u>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u>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략)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u>입법에 반영할 것</u> 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	② ----- ----- <u>검토하고 입법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u> -----

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

제9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 공청회에 개최에 필요한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 등) -----

-----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 -----
-----.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
----- 조치가 필요한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
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
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 의
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
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전문) ① (생략)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
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1조제1항-----
----- 구의회-----

-----.
----- 「지방자치법 시
행령」-----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전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실-----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③ (생략)

제16조(공포방법) ① (생략)

②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구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7조(공포일 등) ① (생략)

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
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18조(자치법규 정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
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
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
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공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의회-----
---.

제17조(공포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날-----
-----.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및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제18조(자치법규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주민-----

4.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등)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0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신 설>

<신 설>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1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의견제출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

<u><신 설></u>	<u>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한다.</u> <u>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u> <u>제23조(의견반영) 구청장은 검토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u>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고 영 룡